문제 10.

10.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증거 분석시,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절차위반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경우 분석관으로서 사전 조치 및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?

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피압수자, 변호인 등 관련인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, 예외적으로 피압수자, 변호인 등 관련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을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참여 없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. 이 경우, 영장 집행을 종료한 후 해당 참여권한을 가진 관련인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.

참여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서는

- 1.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 검사, 피고인,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,
- 2.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에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해야하며 (단, 참여를 거부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)
- 3. 이러한 통지를 함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장소가
 - 1) 공무소, 군사용 항공기, 선박, 차량인 경우 그 책임자에게
 - 2) 그 외의 타인의 주거, 간수자 있는 가옥, 건조물, 항공기 또는 선박, 차량일 경우 주거주,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하며,
 - 3) 주거주,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웃사람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.

라고 명시하고 있다.

이에 사전조치로서, 피압수자, 변호인 등 관련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 서면으로 받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증거물을 이동하거나 복제, 탐색, 출력하는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.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해당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 또한,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집행이 끝난 이후 압수목록(원본 USB, 이미지파일 등)을 피압수자, 변호인 등 참여권한을 가진 관련인들에 교부하여야 한다.

대응 방안으로 피압수자, 변호인 등 관련인의 미참여 의사를 포함하여 제출받은 확인 서면을 법정에 제출하여 해당인이 미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하고, 급속을 요하는 때의 상황을 담은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불가피하게 영장집행에 참여권을 보장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. 또한, 객관적으로 인증된 전문가의 집행과 전문도구의 사용 등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 압수목록을 교부했던 사실에 대해 증명한다.